

# G-Welfare Weekly Report

## 01

### 중앙정부 정책동향

#### 1. 사회적 경제 기금 조성

##### 01 주요내용

-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하는 「사회적경제 기본법」 제정안이 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후 중앙과 지방이 각각 상반된 의견을 표명하고 있음
-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금 설립에 난색을 보이는 반면, 충남, 강원 등 지방정부에서는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역 금융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
  - 충남의 경우 지역의 사회적경제 자금지원은 적절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, 실질적으로 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운영의 필요성을 강조
  - 강원도는 ‘풀뿌리 기업 기금’ 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, 향후 강원도 내 풀뿌리조직(사회적경제)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 중
- 향후 「사회적경제 기본법」 제정 이후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운영의 주체와 지역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가능성 등에 대한 정책 설계 및 추진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
  - 구체적인 내용은 「사회적경제기본법」 제정 이후 시점에 관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전망

사회적경제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-지방정부의 상반된 의견 표명

##### 02 경기도에의 시사점

- 경기도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‘경기도형 사회적경제 금융 시장’을 형성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
  -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‘경기도형 I-Bank’ 는 지역의 사회적경제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일 뿐, 이 외의 주체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바, 참여가 능한 주체의 범위, 적용가능한 영역의 우선 발굴 등 총체적인 정책 대안 모색이 필요
- 경기도 내 활용가능한 기금의 유형 및 총량에 대한 검토 필요하며,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시 유사중복 등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
  - 사회적경제 기금 조성 시 고려 사항은 ①서민경제, 복지고용의 관계 설정(ex: 사회적경제 원리 적용 가능성), ②현 금융 및 신용시스템의 활용, 관계 설정(ex: 금융서비스 대상 확대 vs 신용 창출 방안 등), ③목표와 수단의 정체성 및 일관성(ex: 목표체계 설정, 사회적 가치 반영 등), ④경기도 사회적경제 금융시스템 구축의 필요성(ex: 사회적경제 영역에 한정 vs 경기도 지역금융 시스템의 보완) 등에 검토가 필요

지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지역금융시장 형성 필요

## 2. 발달장애인법 시행령, 시행규칙 입법예고

### 01 주요내용

-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법 시행령·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, 5월 20일부터 6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함
- 11월 21일 시행을 앞둔 발달장애인법이 위임한 사항과 집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
-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보조하기 위해 민법 상 성년후견제의 이용지원, 정책정보 제공기준, 관계 공무원 교육 등을 규정
  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특정후견 사건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 업무를 지원하며 치료·요양이 필요한 경우 한정후견도 지원 가능
    - ※ 성년후견제란 노령·장애·질병 등의 사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들을 위해 후견인을 선임해 돕도록 하는 민법상의 제도로 2013년 7월에 도입됨
  -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정책정보 제작기준을 마련
  - 전담 검사·경찰,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
- 발달장애인의 맞춤형·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
  - 개인별 지원계획의 신청은 해당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하며,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뢰를 받아 신청자와 면담 등을 실시하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
    - ※ 개별지원계획에 포함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하여 확정할 예정
- 재활 및 발달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·운영 절차 등 규정
- 발달장애인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가족의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
-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고,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, 변호사, 특수교사 등을 배치하여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

### 02 경기도에의 시사점

-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을 위한 기반 조성
  -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역할 : 자해공격 등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행동치료·지원 계획 수립 및 서비스 제공,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교육, 행동발달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, 행동치료·지원전문가의 양성 등
- 발달장애인이 이해 가능한 형태로 정책정보 제작 및 보급 준비
  - 의료, 보육, 교육, 소득보장, 주택, 직업과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관련 정보 등
- 위기발달장애인 쉼터 지정
  - 장애인거주시설 중에서 위기발달장애인쉼터를 지정하여 운영, 상근인력이 시설 당 최소 2인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함
-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조례 제정 필요

발달장애인법  
시행령·시행규칙  
입법예고(5.20~6  
.29)

성년후견제의  
이용지원,  
정책정보제공기준,  
개인별지원계획  
수립절차 및  
방법,  
행동발달증진센터  
의 설치운영절차  
규정 등

지역발달장애인지  
원센터 및 행동  
발달증진센터  
설치 준비

# 02

## 시도/시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### 1. 전국 지자체의 복지기준선

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한계를 극복하고 실생활 수준을 반영하는 복지기준선 마련

서울	<p><b>‘서울시 복지기준’ 추진 체계</b> : 추진위원회 구성(6개 분과 65명, 시민대표), 추진방향 설정 및 기준안 구성, 시민 On-Line의견 수렴, 시민정책워크숍 278건, 서울시민복지기준 초안 작성, 지원 TF 기준안 마련 지원 및 실행가능성 확보, 서울시민 메아리단 5개 분과 220명 회의 참관 및 온라인 모니터링</p> <p>소득분야 : 서울에 맞는 최저생계 보장, 중위 소득 50% 수준 이상 확보 지원                  주거분야 :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% 이하 주거공간 43m<sup>2</sup> 이상,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%이하, 주거공간 54m<sup>2</sup>이상                  돌봄분야 : 소득 10%이내 지출로 돌봄서비스 이용, 10분 이내 품질 높은 돌봄서비스 이용                  건강분야 : 필수 보건 의료서비스 이용권 보장,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해소                  교육분야 : 학령기 교육 기본권 보장, 성인의 평생교육 기회 증진</p>
부산	<p><b>시민 최저·적정 복지기준선 마련 추진</b> : 일반복지 6대 영역(소득·고용·돌봄·교육·주거·건강), 동네복지 7대 영역(기초생활보장·고용·건강·교육·주거·안전·생활여건), 생애주기 8대 영역(돌봄·교육·건강·위기개입·장애·고용·주거·지역사회)에 걸쳐 영유아, 아동, 청소년, 청년, 중년, 노년 등 6개 단계별 최저 또는 적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</p>
광주	<p><b>‘시민복지기준선 7월 발표</b> : 소득, 주거, 돌봄, 건강, 교육 등 5개 분야에 걸쳐 기준선을 마련 - 학계, 복지현장, 시민단체 등 총 74명의 복지 전문가로 구성된 `추진위원회`를 출범하고 소득, 주거, 돌봄, 건강, 교육에 총괄분과위를 더해 총 6개 분과위를 조직, 시는 추진위원회 운영과 온라인 게시판 운영, 설문조사, 광주시민 공개 토론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예정</p>
대전	<p><b>‘대전시민사회복지기준선’ 마련을 위해 시민추진위원회 출범</b>                  - 워킹그룹을 통해 대상 영역과 추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안을 결정, 소득·주거·돌봄·건강·교육·지역공동체 등 6대 대상영역을 선정, 시민추진위원회 출범                  - 공청회, 정책토론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발표 예정</p>
전북 완주군	<p><b>군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평균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복지기준선을 마련, 내년 복지정책에 반영 예정</b>                  -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복지기준선 방향 설정, 군민의견 수렴 등 초안 마련                  -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, 소득, 돌봄(노인·장애인·아동)영역을 설정해 완주군민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, 최저생활 보장제도를 도입</p>

전국 지자체의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 진행

### 2. 주요 복지기관 및 시설 등 동향

대한노인회 "노인 기준연령 높이는 방안 공론화"

- "現 65세에서 단계적으로 70세, 국가재정 걱정해 길 터주기". 그러나 노인 빈곤율이 49.6%인 한국 현실에서 자칫 노인 복지 축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음
- 일본은 2013년부터 노년의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고령자 정의에 대한 검토를 이미 시작하였으며, 신체능력에 따라 75세 이상으로 검토 중이나 연금, 의료제도의 설계에 영향을 끼쳐 신중을 기하고 있음

〈OECD 주요 회원국의 공식 실질 은퇴 연령〉

(단위 : 세)

	평균	한국	멕시코	일본	미국	영국	벨기에	룩셈부르크	칠레
공식은퇴연령	65	60	65	65	66	65	65	65	65
실질은퇴연령	64.2	71.1	72.3	69.1	65.0	63.7	59.6	57.6	69.4

자료 : OECD, 2012. 남성 기준, 공식은퇴연령은 연금수급 개시 연령임.

# 03

## FACT CHECK

### 1. '일본정부, 고수입 고령자의 연금 감액 추진?'

- 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관한 국내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, 일본은 고수입 고령자에 대한 연금 감액안을 추진하고 있음
- 5월 19일 열린 일본정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학계와 경제계 출신의 민간위원이 '고령자 연금 감액안'을 제안(아사히신문, 2015.5.19.)
  - 국가의 부담을 줄이고 세금을 내고 있는 현역세대의 장래부담을 줄이고자, 일정 수입이 넘는 고령자에 대해서 기초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
- 오는 6월 '일본 정부 재정재건화 계획'에 포함할 예정이나 고령자의 반발로 난항 예상
- 주요 논점
  - **세대 내의 재분배 가능 강화** : 연금이 추구해야할 목표를 세대 간의 공평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세대 내 공평의 중요성을 강조
  - **사회보장제도 전체를 통한 적정선 추구** : 연금제도만의 '부분최적' 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을 포함한 세금제도, 타 복지제도 등을 포함하여 '전체최적' 의 관점에서 고령자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및 타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적절한 부담, 복지의 적정선을 맞추는 것이 중요
  - **취업 인센티브 고려** : 수입에 대한 연금 감액이 고령자의 취업인센티브를 저해하지 않는지의 관점에서 조율이 필요

(OECD 주요 국가별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) (단위 : %)

네델란드	덴마크	호주	핀란드	캐나다	한국	독일	미국	영국	일본
91.4	83.7	60.2	54.8	51.0	43.9	42.0	41.0	37.9	37.5

자료 : OECD, 2013, 중위소득자 기준.  
\*명목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, OECD 평균소득 기준이며, 실제 가입기간을 반영한 실질소득대체율은 한국의 경우 18~23%정도임

# 0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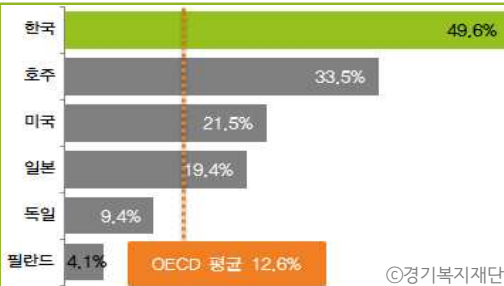
## 통계로 보는 복지

### 1. 급증하는 1인 가구와 가난한 노인

경기도 1인 가구 증가 추이(단위:천가구)



OECD 주요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(2013년)



자료 : 통계청, 인구주택총조사 2010.

자료 : OECD, 2015 소득불평등보고서.

-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20%를 넘었으며, 2020년에는 25%를 넘을 것으로 예상
- 5월 21일 OECD 발표에 따르면,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4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음
- 독거노인의 빈곤율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의 빈곤율의 3배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의 지속적 증가가 전망되는 만큼 혼자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